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이착륙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착륙장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착륙장 준공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공사가 완료된 이 착륙장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 치경찰공무원에게도 부여하고, 이착륙장 설치공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증명 서를 받기 전에는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착륙장의 설치 및 이용 안전을 도모 하는 한편,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12 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고시 이후 건축물·구조물 등의 설치 또는 방치 허가 여부를 혐의하는 대상에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김 현 미 장 관

◉법률 제15311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통안전담당자"를 "제5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으로,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안전관리

上

자의 종류 및 직무, 시험의 실시 등에 관하여"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및 시험의 실시 등에"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1.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지정 방법 및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2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 수 교통수단운영자가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교통안전 전문가의 의무 고용을 통한 자율적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 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김 현 미 장 과

● 법률 제15312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